

학교법인 레마학원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재적이사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	2인

1. 일 시 : 2023년 04월 27일(목) 16:00 ~ 16:30
 [회의소집 통보일 : 2023년 04월 18일(화)]

2. 장 소 : 화상회의(증빙자료 별첨)

3. 임원 출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7인) : 윤원영(이사장), 노만균, 송 민, 이미순, 이영희, 임성빈, 조장환 이사
- 감사(2인) : 김명원, 조영임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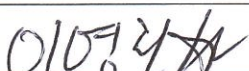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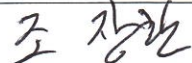
○ 불참 임원

- 이사(1인) : 박중환 이사

※ 배석자 : 방진희 법인사무국장, 금지환 사무처장 직무대행

4. 안 건(심의)

- 가.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나. 제2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 다. 제3호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 라. 제4호 :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 마. 제5호 :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5. 회의 내용

□ 개회 선언, 기도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재적이사 8인 중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한 후, 법인사무국장의 2022학년도 제5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는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건 심의는 제1호 안건부터 제5호 안건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되, 일부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씩 일괄 상정하겠다고 알리다.

□ 안건 심의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 이사장(의장) :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안건에 대하여,

(1) 변경 사유

- 학교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감사)의 임기를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조정하고, 대학의 학과 및 전공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변경 내용

- 사립학교법 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임원(감사)의 임기를 변경함(제19조)
-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위탁에 관한 조를 신설함(제75조의3)

(3) 신규 조문 대비표(별도 붙임 자료)

~ 등의 학교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조장환 이사 : 감사의 임기를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서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각종 업무와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학교의 사회복지학 전공 등과 연계를 통해 재학생 및 졸업생의 연구, 실습, 실기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간서명	송민	송민	이영희	이영희	조장환	조장환
-----	----	----	-----	-----	-----	-----

- 송 민 이사 : 조장환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 이사장(의장) : 제2호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심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하도록 지시하다.
- 사무국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임원(이사) 선임(안) 안건에 대하여,

(1) 제안 이유

- 이사 2인(교육이사 1인 포함)이 2023.06.25.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자 함
 - 임기만료예정 이사 현황(2인)

구 분	성 명	임 기 (3년)	비 고
임기만료 예정	조 장 환	2020.06.26. ~ 2023.06.25.	중임, 상임이사
	임 성 빈	2020.06.26. ~ 2023.06.25.	교육이사

(2) 법령 및 정관의 관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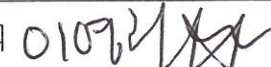

- 사립학교법(제21조)
 -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 학교법인 정관(제21조)
 -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3) 이사 선임시 고려사항

- 교육이사는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정수 8인의 1/3 이상 즉 3인 이상을 교육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 임기만료예정 이사 2인 외에 재적 교육이사가 2인이므로, 후임 1인도 교육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4) 이사 선임(안)

- 조장환 이사와 임성빈 이사를 다시 선임(연임)하고자 함
 - 임기 : 관할청(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일로부터 3년간
- ~ 등의 임원(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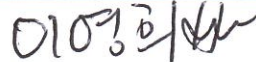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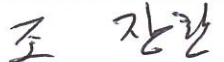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안건 설명에 대하여 이사들의 질문이 없으므로 이사 선임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다.
- 이사장(의장) : 먼저, 이사 2인 선임을 선언하고, 당사자인 조장환 이사와 임성빈 이사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므로 잠깐 화상회의에서 나가서 기다려 주기 바라며 곧 다시 회의에 초대하겠다고 하다. (조장환 이사와 임성빈 이사 회의에서 나감)
- 송 민 이사 : 학교법인의 운영과 대학 경영에 해박한 조장환 이사를 다시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오랜 교육경력과 여러 분야의 산업체 경력을 갖추고 있는 임성빈 이사 또한 연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이영희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이영희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이사를 제외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 선임 건은 조장환 상임이사와 임성빈 이사가 연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조장환 이사와 임성빈 이사 회의에 다시 들어옴)

(제3호 안건)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제4호 안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 이사장(의장)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과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 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며, 먼저 각 회계별 결산(안)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를 법인 감사인 조영임 감사에게 요청하다.
- 조영임 감사 : 학교법인 레마학원 김명원 감사와 조영임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레마학원의 2022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법인 및 예명대학원대학교의 회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고, 감사결과 이사회 운영은 적절하며 2022회계연도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및 학교 교비회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내부감사를 진행한 감사(監事) 2인의 수고가 많았음을 언급한 후 법인회계 결산(안) 내용은 법인의 사무국장이, 교비회계 결산(안) 내용에 대해 학교의 사무처장에게 설명할 것을 지시하다.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 사무국장 : 먼저, 회계법인의 외부 결산감사를 받은 결과 일부 계정과목별 조정 외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 의견이 있었고, 교비회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학교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한 후, 배부된 회의자료를 근거로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결산 재무제표인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순으로 계정과목별 내용 및 증감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다.

[법인 일반업무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내 용
예 산 액	357,422,307	348,065,313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10,509천원 감소 2022회계연도 예산 대비 76천원 감소
결 산 액	357,345,490	367,855,312	
차기이월자금	<u>93,376,647</u>	117,222,307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 액 (당기말-전기말)	비 고
자 산(A)	15,186,519,654	15,211,078,584	△24,558,930	
부 채(B)	381,535,880	391,831,840	△10,295,960	
기 본 금(C)	16,823,655,756	16,823,655,756	0	운영차액 미포함
운영차액 (A-B-C)	<u>△2,018,671,982</u>	<u>△2,004,409,012</u>	△14,262,970	

운영계산서 결산(안)

구 분	당 기	전 기	차액(당기-전기)	비 고
운영수익(A)	240,237,856	330,110,128	<u>△89,972,272</u>	
운영비용(B)	254,500,826	261,100,904	<u>△6,600,078</u>	단기운영차액 미포함
당기운영차액 (A-B)	<u>△14,262,970</u>	<u>69,009,224</u>	<u>△54,746,254</u>	

[법인 수익사업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내 용
예 산 액	622,655,894	622,062,251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18,499천원 감소 2022회계연도 예산 대비 37,779천원 감소
결 산 액	584,876,162	603,375,633	
차기이월자금	<u>144,231,273</u>	<u>58,455,894</u>	

□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액 (당기말-전기말)	비 고
자 산(A)	7,627,886,671	7,576,254,888	51,631,783	
부 채(B)	2,153,885,611	2,102,253,828	51,631,783	
자본금(C)	3,940,077,197	3,940,077,197	0	잉여금 미포함
잉여금 (A-B-C)	1,533,923,863	1,533,923,863	0	

□ 운영계산서 결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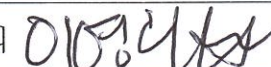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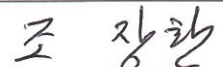
구 분	당 기	전 기	차액(당기-전기)	비 고
운영수익(A)	736,420,268	775,344,282	△38,924,014	
운영비용(B)	736,420,268	828,447,863	△92,027,595	단기순이익 미포함
단기순이익 (A-B)	0	△53,103,581	53,103,581	

○ 사무처장 직무대행 : 이어서 배부된 회의자료를 근거로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 재무제표인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순으로 계정과목별 내용 및 증감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다.

[대학 교비회계]

□ 자금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22회계연도 (당 기)	2021회계연도 (전 기)	내 용
예 산 액	2,513,192,952원	1,994,806,439원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493,546천원 증가 2022회계연도 예산 대비 1,583천원 감소
결 산 액	2,511,609,606원	2,018,063,796원	
차기이월자금	526,611,839원	466,032,952원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액(당기말-전기말)	비 고
자 산	7,501,339,655원	7,344,562,551원	156,777,104원	
부 채	537,285,670원	517,898,981원	19,386,689원	
기 본 금	6,900,000,000원	6,900,000,000원	0원	
운영차액	64,053,985원	△73,336,430원	137,390,41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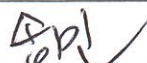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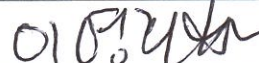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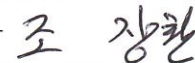
□ 운영계산서 결산(안)

구 분	당 기	전 기	차액(당기-전기)	비 고
운영수익	2,066,562,778원	1,713,607,074원	352,955,704원	
운영비용	1,929,172,363원	1,672,024,825원	257,147,538원	
당기운영차액	137,390,415원	41,582,249원	95,808,166원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 임성빈 이사 :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모두 법인의 내부감사와 회계법인 회계사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이미 받았고 재무제표별 증감 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교비회계의 경우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도 이미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임성빈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과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제3호 안건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 과 제4호 안건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 안건)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 이사장(의장) :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을 할 이사로 송 민 이사, 이영희 이사와 조장환 이사를 지정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간서명	송 민 	이영희 	조장환 
-----	---	--	---

- 송 민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영희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조장환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송 민 이사, 이영희 이사, 조장환 이사가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3학년도 제1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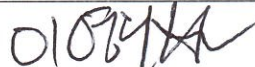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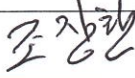
2023. 04. 27.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u>윤원영</u>
	이사	노만균	<u>노만균</u>
	이사	송민	<u>송민</u>
	이사	이미순	<u>이미순</u>
	이사	이영희	<u>이영희</u>
	이사	임성빈	<u>임성빈</u>
	이사	조장환	<u>조장환</u>
	감사	김명원	<u>김명원</u>
	감사	조영임	<u>조영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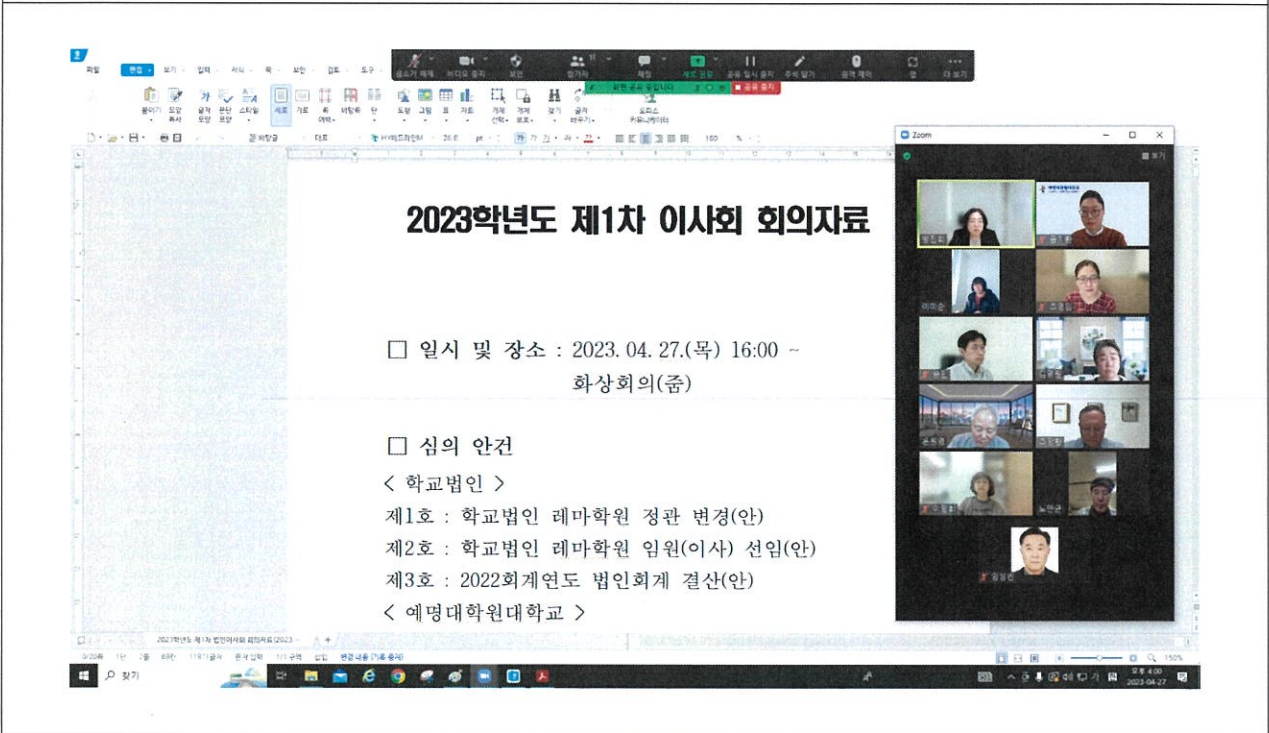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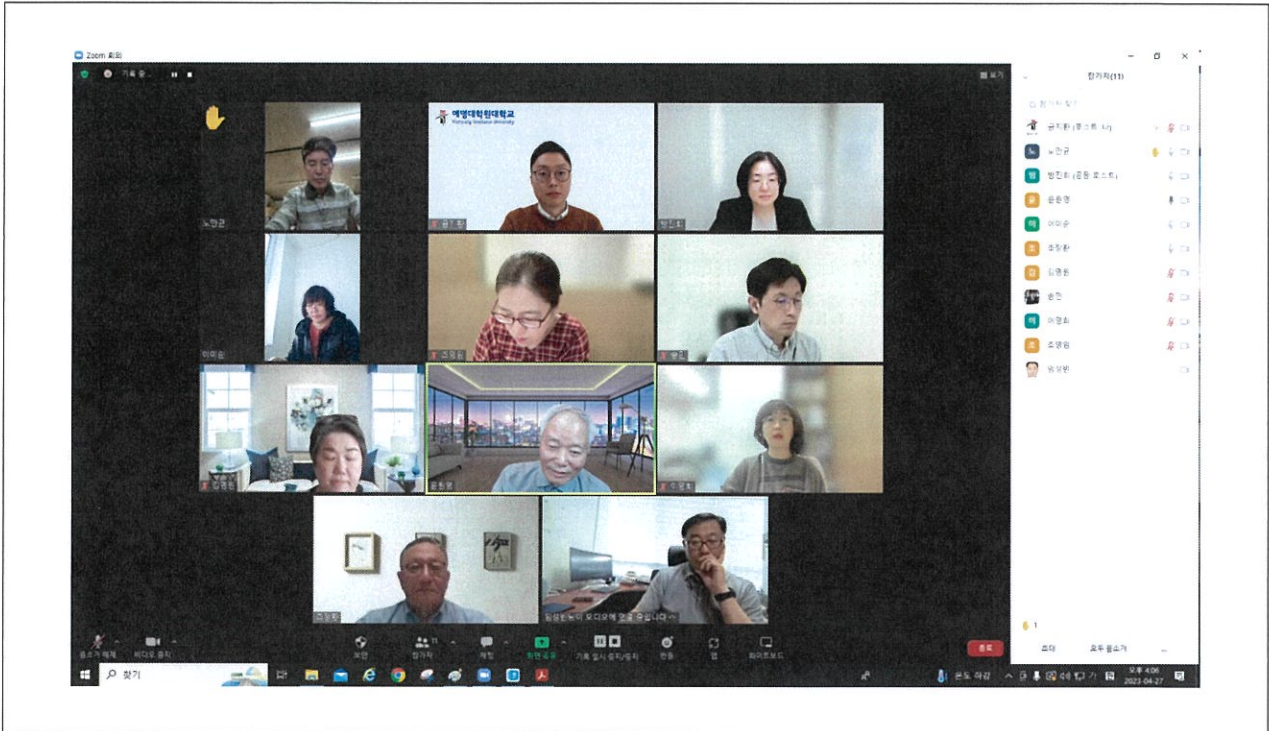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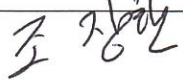
□ 정관 변경(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3년(중임 가능) 2. <u>감사 2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u> ② (생략)</p>	<p>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3년(중임 가능) 2. <u>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u> ② (현행과 같음)</p>	<p>사립학교법(제2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임원(감사)의 임기를 변경함</p>
<p><u><조 신설></u></p>	<p>제75조의3(운영법인 및 기관) ①<u>법인 및 대학은 학과 및 전공과 관련하여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u> ②<u>운영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무부서를 설치 운영하되 주무관청의 승인 또는 감독이 있는 기관은 해당 관할청의 관련법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운영법인 및 기관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를 신설함</p>
	<p>부 칙 <u>(시행일 및 임원(감사)의 임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재임 중인 임원(감사)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u></p>	<p>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함</p>

간서명	송민 	이영희 	조장환 
-----	--	--	---

(화상회의 증빙자료)



간서명	송민		이영희		조장환	
-----	----	---	-----	--	-----	---